

자활근로 참여신청서 (표준안)

1.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2016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참여조건

○ 사업(업무)내용 : “\_\_\_\_\_사업”

○ 작업 장소 : “\_\_\_\_\_”

○ 자활급여 등 참여조건

- “1일의 급여 명기”(일일급여로 지급방식은 매월 말일 지급)

·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

- 월~금요일(또는 토요일) 개근 시 주 1일 주차수당 지급

(단,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엔 주차수당 지급하지 않음)

-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월차수당 추가 지급

- 1일 교통비 등 실비 3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
○ 참여근무기간 : 2016년 월 일 ~ 2016년 월 일

○ 근무 시간

- 월~금요일(또는 토요일), 1일 8시간(09:00~18:00)

※ 단, 동절기(11월~2월)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(근로유지형 제외)

※ 지역 및 환자특성상 정상근무이외의 야간근무, 새벽근무 및 심야근무(교대근무) 가능

○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

3.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

○ 신청인은 보장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제공·활용함에 동의합니다.

- 정보제공 범위 :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, 서비스이력, 취(창)업 정보 등

- 사용목적 : 자활근로사업 사업수행 및 평가 관련 자료 제공

4. 기타 사항

○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, 자활사업방해, 폭력, 폭행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.

※ 자치단체별 조건이행 판단기준이외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(조건이행 판단 기준이 우선함)

○ 위에 게시된 내용외의 사항은 「자활사업지침」에 따라 시행되며,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참여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6. .

성 북 구 청 장 김 영 배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 입니다.

신청인 \_\_\_\_\_

(생년월일) \_\_\_\_\_

(서명) \_\_\_\_\_

※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(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계층)에는 상기 참여조건(안)을 적용하며,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